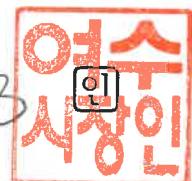


제23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7 월 3 일

여 수 시 장

2024.7.3



여수시 조례 제2112호

붙임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2112호

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노후 계량기”를 “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”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.

제4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6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지방상수도 사용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, 감면기간, 감면액, 감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.</p> <p>제40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· 2. · 3. · 4. · 5.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노후계량기 또는 <u>동파계량기</u>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.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· 2. · 3. · 4. · 5.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지방상수도 사용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 대상, 감면기간, 감면액, 감면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
6. (생 략)	